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
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엽제후유증환자나 그 선순위 유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,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고궁 등의 이용지원(안 제10조의3)

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, 고궁 등 이용증 대신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

(안 제15조의2 조문제목 개정, 제1항 및 제2항 신설)

-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선순위 유족,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

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.(안 제15조의제1항 신설)

-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(안 제15조의제2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공카드 30만장 구입예산 15억원
편성확보(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7개 보훈관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포함)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이전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2항 후단 중 “국가유공자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제15조의2의 제목 “(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)”을 “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·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나 선순위 유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증을 발급한다.(이하 “국가보훈등록증”이라 한다)

1.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선순위 유족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
2.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제16조제1항제29호 중 “대한”을 “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나
선순위 유족, 고엽제후유의증환
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
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
가보훈대상자증을 발급한다.(이
하 “국가보훈등록증”이라 한다)

1.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
제후유증환자 및 그 선순위
유족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
고엽제후유증환자의 부 또는
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
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
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

2.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
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
유증 2세환자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
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
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
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
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
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
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
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
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(생략)

제1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.

1. ~ 28. (생략)

29. 제15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
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
발급

30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③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제1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

[illegible]

1. ~ 28. (현행과 같음)

29. _____
 _____ 대한 국가보
훈등록증 및 _____

30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